

담당자	책임자	부점장

파생거래신용보강약정서

부산은행 앞

20 년 월 일

고객 : _____ (인/서명)

주소 :

인감/서명 대조	
-------------	--

본 파생거래신용보강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는 (주)부산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위 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20 년 월 일에 체결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부속서류로서 담보약정서이며,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의 목적은 고객이 기본계약서에 따라 은행과 파생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에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함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의스포져한도를 정하여 운용하고, 순신용금액의 증가 시 신용보강조치 절차 및 금액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약정의 적용

본 약정서는 고객과 은행간에 기타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개별 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하고, 본 약정서의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에 체결하는 모든 파생상품거래에 적용된다. 본 약정서를 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고객과 은행간에 적용할 다른 담보관련약정서가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약정서는 본 약정서의 체결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본 약정서는 해당 약정서를 대신하여 해당 파생상품거래에 적용된다.

배제되는 거래 및 담보약정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한 배제 포함):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파생거래 순신용금액한도" (이하 "순신용금액한도"라 한다)라 함은 고객이 은행과 파생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에 대한 신용의스포져가 일정규모에 이를 때까지는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제공 없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한도로서,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 영업속성, 재무



(210X297 서식 604011 백상지 80g/m 2016.4.29 개정)

BNK 부산은행

상황, 은행과의 거래현황 등을 심사하여 고객에게 부여한다.

2. “신용익스포져”이라 함은 기본계약서에 의해 고객과 은행간에 이루어진 전체 파생거래 대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규정한 커런트 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본 약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제2조 또는 거래확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별파생거래는 신용익스포져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은 신용익스포져 산정방식을 고객에게 사전에 별도로 고지한다.

3. “파생거래 순신용금액”(이하 “순신용금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객의 신용익스포져에서 고객이 이미 납입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외한 순수한 신용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순신용금액 = 신용익스포져 - 고객이 납입한 보증금 또는 담보

4. “보증금 또는 담보”라 함은 고객의 순신용금액이 순신용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고객이 은행에 제공하여야 하는 보증금 또는 담보를 말한다.

5. “추가약정서”라 함은 고객의 신용등급변경에 따라 순신용금액한도를 증액하고자 할 때 본 약정에 추가하여 고객과 은행간 체결하는 약정서를 말한다.

제4조 파생거래 순신용금액한도

1. 고객의 순신용금액한도는 아래와 같다.

파생거래 순신용금액한도	₩ _____
--------------	---------

2. 고객은 순신용금액한도 이내에서만 은행과 신규 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하며, 순신용금액이 순신용금액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의 청산 또는 반대거래를 제외한 신규 파생거래를 할 수 없다.

3. 본 약정서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개별파생거래의 리스크관리 및 거래의 적합성, 법률상 제약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규 파생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약정의 조기해지 및 파생거래손실한도의 변경

1. 본 약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고객의 귀책거래종료사유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거나, 고객이 본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2.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 영업속성, 재무상황, 은행과의 거래현황 등을 최소 연1회 이상 심사하며, 고객의 신용등급 변경 시 위 제4조에서 정한 순신용금액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3. 순신용금액한도의 변경은 고객과 은행과의 약정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새로운 순신용금액한도는 변경 약정서의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6조 거래의 평가

1. 신용익스포져는 일별 공정시장가치액을 통하여 기본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계



(210X297 서식 604011 백상지 80g/m 2016.4.29 개정)

BNK 부산은행

산대리인이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2. 순신용금액이 본 약정서의 순신용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한다.
3. 신용이스포져 산정액 및 담보의 평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고객은 해당 평가금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은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거래 또는 담보를 재평가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고객이 제3항의 재평가금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은 상호협의 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이 평가기관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하기로 동의하며, 비용은 상호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7조 담보의 제공

1. 고객의 순신용금액이 순신용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은행의 통지수령일로부터 (신용이스포져 산정액 또는 담보의 평가액이 재평가되는 경우 제6조 제3항에 따른 은행의 통지 수령일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통지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증금 또는 담보 추가제공 후 순신용금액이 제4조의 한도금액 이내가 되도록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5조에 의하여 순신용금액한도가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순신용금액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고객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전 각항의 보증금 또는 담보제공 시 단위금액은 ()원 단위로 하며, 단위금액 미만의 자투리 금액은 단위금액 단위로 철상한다. 이 조에 의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은 [별첨]과 같으며, 은행은 해당 담보물의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은행의 영업점 등에도 비치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담보의 종류에 따라 은행의 표준적인 양식과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에 의하여 근질권계약서, 기타 유사한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5.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제공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일까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은행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순신용금액한도 초과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은행은 고객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전체 또는 일부 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종료 시에는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담보의 반환 및 교체

1. 고객이 본 약정서 및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모든 거래가 종료된 경우 은행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모든 거래의 종료 전이라도 고객의 순신용금액이 순신용금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은행에 대하여 이미 납입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차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3. 은행은 전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담보의 반환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보증금 또는 담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4. 고객은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적격담보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 담보물의 교체를 은행에



(210X297 서식 604011 백상지 80g/m 2016.4.29 개정)

BNK 부산은행

요청할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담보물의 교체를 요청 받은 경우, 은행은 요청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교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하며, 교체가 승인되는 경우, 고객이 은행에 교체하고자 하는 담보를 실제 제공한 날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에 기존의 담보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담보의 처분

본 약정의 의무를 고객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기본 계약서에서 정한 고객의 귀책거래종료사유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고객이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은 근질권계약서 등 기타 고객과 은행이 별도로 체결한 담보권 설정에 관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보증금 및 담보를 임의처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고객의 최종청산잔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정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된다.

2. 본 약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위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기타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계약서를 따르며, 본 약정과 기본계약서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의 여신기본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 기타특약사항

	본인	(인)
--	----	-----

본인은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별첨포함)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	본인	(인)
---	----	-----



[별첨]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

본 약정서 제7조 제3항의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준가격 ¹⁾	담보인정비율 ²⁾
보증금 (현금)	원화 액면금액	100
	외화 액면금액	80
당행수신 ³⁾	원화 납입금액(중도해지금액)	100
	외화 액면금액	80
타은행 ⁴⁾ 수신	원화 발행금액	100
	외화 원화환산발행금액 ⁵⁾	70
유가증권 (채권)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은행(보증)채 대용가격 ⁶⁾	100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발행채권 ⁷⁾ 대용가격	100

- 1) 기준가격: 담보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감정·심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담보인정비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가격
- 2) 담보인정비율: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비율
- 3) 예·적금담보에 한하며,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은 제외
- 4) 타은행: 국내은행(우체국 포함)에 한함
- 5) 원화환산발행금액: 외화표시액면금액 X 담보설정일 통화별 기준환율
- 6) 대용가격: 담보 평가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대용가격
- 7) 개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및 공사 등이 발행한 채권
(예시: 산업은행채, 중소기업은행채, 예금보험공사채, 도로공사채 등)



(210X297 서식 604011 백상지 80g/m 2016.4.29 개정)

BNK 부산은행